

인천지방법원 2016. 3. 23 선고 2015가단5958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3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인천 강화군 C 대 92㎡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며,
나. 2015. 1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 인도일까지 연 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재욱

별지